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2023. 7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및 인프라 구축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6월 30일(금)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1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1. 세제·금융

□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공제율 30%) 혜택('23.7.1.)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23.12.14.)
 -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11년 G20 도입)
-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의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대출로 한번에 전환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 운영('23.5.31.)
 - *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신용대출 취급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대출 대상

2. 교육·보육·가족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3.2)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 본격 추진('23 하반기)
 -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25년 목표),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시범교육청 중심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등
 - ** 하이터치 : 교사의 역할 변화(지식전달자→학습 참여 유도 및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
 - 하이테크 :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최적화 교육
- 스톡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 가능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7.18.)
 - *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제공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23.6.1.)
 -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3. 보건·복지·고용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23.9.25.)
 - *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23.12월)
 - * 비대면 상담,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 제공



-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23년 하반기)
 - *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방문형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서비스 지원
 - ** '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 우선 추진,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 및 규모 확대

-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 구축('23.9월)
 - * (개인) 직무능력계좌 내의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 발급 →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활용
 - ** (기업) 구직자가 제출한 인정서 통해 직무능력정보 확인,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

4. 국토·교통

-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23.7.2.)
 - * 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②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③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하여 교통비 절감 효과 확대(월 1.1~4.8만원 → 월 1.5~6.6만원)('23.7월)
 - * 알뜰교통카드 발급사는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
- 국내공항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승객으로 확대 운영('23.7월)
 - * (기존)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승객만 대상
(확대)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제주공항 출발 →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제주공항 도착승객 대상

5. 환경·기상

- 극단적 집중호우* 발생 시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 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23.6.15., 수도권 시범운영)
 - * 50mm/1h, 90mm/3h 호우 동시 관측 시 1회 발송
-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23.12.28.)
 - * 재활용품 가격 하락,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수거 대란 우려 방지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는 기업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물품이 제값을 받는 여건 조성('23.10.4.)
 - * “주요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
-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하도록 의무화('23.6.7.)

7. 농림·수산·식품

-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청년층에 확산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69만명→ 234만명)('23.5월)
-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챙이, 방어, 전복 및 부세(총 5종)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23.7.1.)
- 물류가 최적화(先거래 後물류)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23.11월)

8. 국방·병무

-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연구, 전문의 자문 및 AI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 제공('23.7~8월)

9. 행정·안전·질서

-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23.4.18.)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23.7.19.)
 - * ① 해당 주택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②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 통일**('23.6.28.)
 - *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고,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
 - **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음(예 :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로 처벌('23.7월)

* 온라인 스토킹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행위 등

□ SRT 승차권 예매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도 신청·이용 가능('23.6.27. 이후 순차 개통)

*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서비스 등 ** 네이버, 카카오T, 토스, 신한마이카, KB스타뱅킹, KB Pay 등

- 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일부 발췌)

<기획재정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현행>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개정>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좌 동)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적용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억원을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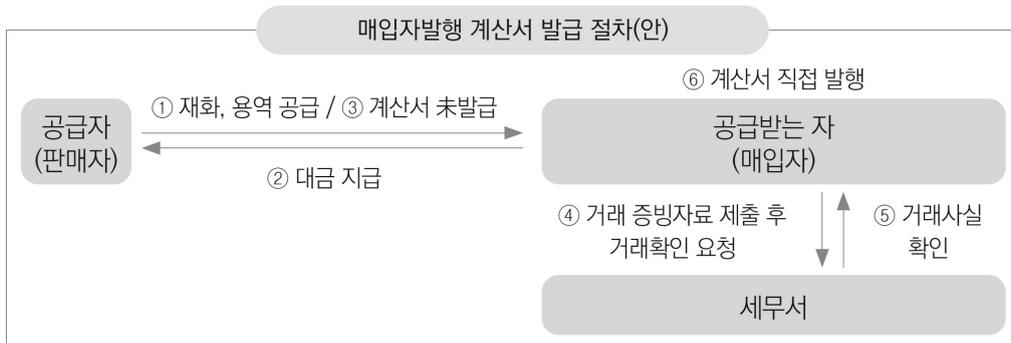
- 추진배경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누적 한도 1억원) 허용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 재화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확인 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나
- 하반기부터는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 부도·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보호
- 주요내용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시행합니다.

▣ (적용요건)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 * 공모펀드 : BBB+이하 회사채 45% 이상,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60% 이상 편입
- 사모펀드 :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 편입

▣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가입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

▣ (적용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추진배경 :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 주요내용 :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시행일 : 2023년 6월 12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분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이분체계(회원제, 대중)를 삼분체계(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로 개편('22.5.3. 개정,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0의2))

총 전		개 정('23.7.1.부터)	
회원제 골프장	12,000원	회원제 골프장	12,000원 ²⁾
비회원제 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¹⁾	-

- 1) 이용료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문체부 고시, '23년 기준)
2) 교육세·농특세(7,200원) + 부가가치세(1,920원) 포함시 총 21,120원

■ 이는 실질적인 골프대중화 기여를 반영하기 위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의 취지,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형평 도모

■ 금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 주요내용 : 2023년 7월 1일 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12,000원의 개별소비세 부과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입장행위하는 분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2023년 7월부터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됩니다.

■ 이는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나,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은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

■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판매가격에서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판매비율* 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경감됩니다.

*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3년 주



기로 고시)

▣ 금번 개편을 통해 국산제품과 수입제품간 과세형평이 제고되고, 국산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
 - (기준판매비율)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2023년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되어 하반기부터는 기본세율로 환원(탄력 3.5%, 한도 100만원→기본 5%)되어 적용됩니다.

▣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세율 30%* 인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 기본세율 5% → 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탄력세율을 종료하였습니다.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되어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및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므로,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시)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 가정)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90만원),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원)로 구매가격은 +36만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 내수진작 대책으로 시작된 제도의 정책목적 달성
- 주요내용 : 제조장 반출·수입가격의 3.5% → 5%로 환원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분부터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외국환거래법」 제정('99년) 이후 연간 5만불로 유지되어 온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금년 7월부터 10만불로 확대됩니다.

- 앞으로 연간 누계 10만불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 그간 기업이 연간 3천만불을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했으나, 금년 7월부터 그 기준이 5천만불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그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환전이 가능했으나, 금년 7월부터 그 대상·범위 등이 확대됩니다.

-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9개 대형증권사는 기업·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고객들은 별도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 :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 최소화
- 주요내용 :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 상향, 대형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 허용
- 시행일 : 2023년 7월 4일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

입찰참가자에게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현재 입찰서류 제공시점이 입찰공고일에서 입찰등록마감일로 규정되어 있어 발주기관이 입찰 공고일에 입찰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입찰참가자가 사업검토를 할 시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발주기관이 입찰서류를 입찰공고일에 즉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가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입찰참가자의 서류 검토 시간 부여
- 주요내용 :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
- 시행일 :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이 상향됩니다.

-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상계약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 특히, 고위험 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 장비에 대하여는 낙찰하한율이 60%에서 80%로 대폭 상향됩니다.

-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낙찰하한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 주요내용 :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구분		낙찰하한율	
		현행	개정
협상계약	소방·군·경 안전장비	60%	80%
	그 외	60%	70%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60%	70%

- 시행일 :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낙찰탈락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를 조기지급하였습니다.

* 턴키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그동안 기술형 입찰에 참가하여 기본설계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 낙찰 탈락이 확정되었음에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 실시설계적격자(1순위) 결정시 2순위 이하 입찰자들은 실질적으로 탈락하나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낙찰자가 결정(12개월 소요)된 이후 보상비 지급
- 향후에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에 설계보상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비용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때 지급
- 시행일 :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2023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App(「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가 해당 App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집니다.



■ 또한,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성실신고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부터 세금 부과·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관환경 구축
- 주요내용
 - (모바일 납부 서비스 제공)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모바일 신고 시 납부세액을 자동 계산하여 고지서 발급 및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납부 시스템' 구축·운영
 - (모바일 신고 확대)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 세관으로 확대
- 시행일 : 2023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전등록을 요구하였습니다.

■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임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11년 G20 도입)

-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 * (전체한도) 외국인 인별 ID 없이도 거래 정보를 통해 외국인 전체 지분 보유규모는 파악가능
 - ** (인별한도) 2개 종목에 대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별도 관리
- 추진배경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과감히 개선
-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
- 시행일 : 2023년 12월 14일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

혁신기업의 글로벌 선도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최고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도 기업당 보증한도가 70억~15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웠습니다.
- 금번 보증한도 확대조치는 신보가 선정하는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리딩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 기업당 최대 200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 고금리,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혁신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성장자금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혁신기업의 빠른 성장지원을 위한 최고보증한도를 200억원으로 확대
 -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기존 150억원 → 변경 200억원
 - (혁신리딩기업) 기존 70억원 → 변경 200억원
-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병과(併科) 가능)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함

- 추진배경 :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자체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은 수준임

* ('18년) 2,547건 → ('21년) 22,752건 ('18년대비 약 9배 증가)

** 현행 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

• 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 확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定義)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 가능
- (처벌수위 강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併科) 가능)

- 시행일 : 2023년 11월 17일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금융분쟁 신속상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하여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위원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됩니다.

▣ 그간 금융 관련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불만도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분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분쟁을 심의·의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독립성도 제고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3분기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 제고(국정과제)
- 주요내용
 - (신속성)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상정제도 마련
 - (독립성)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위원 선정기준 추가
- 시행일 : 2023년 3분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신용대출 취급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대출 대상

▣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4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 대출비교 플랫폼 앱,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총 15분 안에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 은행, 캐피탈사 →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 간 갈아타기 역시 가능하며, 금융소비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대출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플랫폼, 다른 금융회사 앱에서 기존 대출 조회가 가능한 54개 금융회사]

금융업권	금융회사	계
은행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토스	19(전체)



저축은행	SBI, OK*, 페퍼, 웰컴, 다올, 애큐온, 한국투자, JT친애, 신한, JT, KB, 모아, 대신, 키움, 예가람, 하나, 고려, HB	18
카드	국민, 롯데,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7
캐피탈	롯데*, 우리금융, 하나, 한국, 현대, BNK, DGB, JB우리, KB, NH	10

* OK저축은행, 롯데캐피탈의 경우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7월~) 이후 지원 예정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추진배경 : 고금리 시기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
- 주요내용 : 기존대출 조회부터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기까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시행일 : 2023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됩니다.

▣ 금년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 (기존 공개 대상)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금번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를 통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

구분		기존	개편 후
공개기준	체납기간	2년	1년
	체납액	10억원	5천만원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2023년 7월 1일부터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18개)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규 직종)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24.1.1.부터 적용)

** (범위 확대)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신협·새마을금고는 '24.1.1.부터 적용)

※ 보험설계사(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등) 등 일부 직종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 예정(검토)

■ 이를 통해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진배경 :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으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보호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쉽고 간단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상시평가가 새로 도입되고,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위험성평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23.5.22.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재정의하였고, 위험성 결정 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 근로자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Checklist)법,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



법 등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 ▣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년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안전·보건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고, 매년 사업장 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에 대한 부담과 근로자의 참여도 일부 절차에 한정되어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사업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쉽고 간편한 방법을 추가 도입(체크리스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OPS 등),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평가 신설,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평가 결과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한 공유 등
- 시행일 : 2023년 5월 22일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2023년 7월 1일부터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합니다.

- ▣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고용보험법」 제76조의 2),
 - 2023년 7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추진배경 :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산·사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 주요내용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이 운영됩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은 삼성·KT와 같은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입니다.

■ 그간 35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과정만 운영하였으나,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추가 훈련을 원하는 훈련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을 추가로 운영합니다.

*기업의 심화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되어 있는 350시간 이내의 훈련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에 참여하여 신기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추가 훈련을 원하는 훈련생들의 수요 증가
- 주요내용 : 중·고급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되어 있는 350시간 이내의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카드잔액 무관, 기존 훈련참여 이력 무관)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1회 참여 가능
- 시행일 : 2023년 6월 1일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그간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됩니다.

*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되었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경력설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자부담 면제 등 제도 개편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확대)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참여 부담 완화)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 폐지
- 시행일 : 2023년 6월 1일
 - 2023년 6월 1일 이후 개설되는 상담 과정부터 적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 확대

그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를 '23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 ▣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으로 지원한 용자한도를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 이와 병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용자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합니다.

- 추진배경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 주요내용
 - (지원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
 - (용자한도)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 (상환방법)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

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 또한,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더불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보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도록 변경합니다.

- 추진배경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소득요건) 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 월350만원 이하
 - (규정정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2023년 하반기에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 산업인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합니다.

■ 「업종별 취업지원허브」에서는 광역 단위의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광역 단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계의 구인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주요 산업은 입지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산업권역(Industry-Belt)을 형성하며 성장함에 따라 고용서비스 대응체계 전환
- 주요내용 : 산업동향·채용수요 모니터링,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 수료자 매칭, 광역 단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밀착 제공



-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2023년 8월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합니다.

- ▣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 구인애로기업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 주요내용
 - (기업) 구인기업의 여건 및 특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인애로유형별 인사노무-산업안전-채용 컨설팅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 채용 서비스 밀착 제공
 - (구직자) 구직자 역량진단 및 유형분석, 노동시장 정보 분석, 경력개발컨설팅,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종합 제공
- 시행일 : 2023년 8월
 - * 2023년 3월 기업 35개, 구직자 24개 고용센터 →2023년 下, 48개 관서 확대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2023년 7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업의 신고 방법이 개선됩니다.

- ▣ 구직급여는 근로의사 및 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를 하도록 「고용보험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다만 재난 상황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워 실업신고를 신속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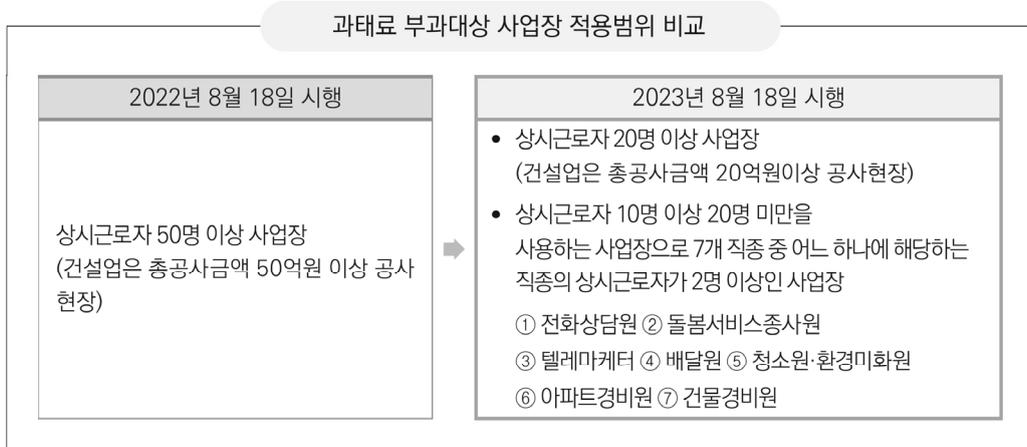
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재난 등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①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②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00만원(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이하



-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확대
- 시행일 : 2023년 8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시법 전환

2014년 시행 이후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되어온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유효기간 : 2024년 7월 21일까지

▣ 중견기업들은 수탁 중견기업 보호, 기술보호, 인력지원 등 14개 특례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 특례(14개) : 조세, 수·위탁, 이러닝사업, 국외판로, 기술보호, 인력지원, 미취업자 고용지원, 매출채권보험, 중진기금, 가업승계, 명문장수, 옴부즈만, M&A, 사업전환

▣ 국내 50여개의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 정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안정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상시화) 유효기간 명시 규정 삭제(부칙 제2조)
 - * 당초 유효기간은 시행 후 10년 뒤인 2024년 7월 21일 까지
- 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향후 설치되는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기존 주택매수 청구와 선택적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외측 전선에서 345kV 60m, 500kV 100m, 765kV 180m 이내의 지역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하되,

* 개별 및 공동 주택가격의 30%(산업통상자원부 부령에 규정 예정)

▣ 최저 1천2백만원에서 최고 2천4백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 추진배경 : 송전선로 일정 거리 내 주택소유자에 대한 '주택매수 청구권' 이외 추가적인 보상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주택매수청구와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3년 7월 4일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분리발주 시행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건축법」 제67조)이 분리발주 대상이며,
*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건축법」 제91조의3)
- 2023년 11월 16일 이후 집행계획공고 대상 및 계약(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사업)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단,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리발주 제외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법 시행 전 개정 예정

- 추진배경 :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의 무분별한 하도급 및 이로 인한 저가 수주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은 건축 등 타 분야와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 시행일 : 2023년 11월 16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됨에 따라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산업부장관은 개정법을 근거로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시 해외 생산품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기반도 강화되었습니다.
- 추진배경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공급망 교란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안정품목 지원사업 근거 신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및 공급망센터 운영근거 신설 등
 - 시행일 : 2023년 12월('23.6월, 공급망센터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2023년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의무가 부과됩니다.

* 수·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또는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진배경 :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값 받는 여건 조성
- 주요내용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약정서 기재·발급 의무 부과,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연동 관련 분쟁조정 등
- 시행일 : 2023년 10월 4일